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6(목) 10:00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46호
- 나. 제 출 자 : 강수정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11. 17.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

2. 제안이유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와 적용대상(안 제2조부터 제3조)
- 나.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배포(안 제6조부터 제8조)
- 다. 권리보장 교육, 상담 보호(안 제9조부터 제11조)
- 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부터 제16조)
- 마. 예산의 지원(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1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0. 11. . ~ . .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금천구청 및 금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정의와 적용대상(안 제2조부터 제3조)
-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배포(안 제6조부터 제8조)
- 권리보장 교육, 상담 보호(안 제9조부터 제11조)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부터 제16조)
- 예산의 지원(안 제17조)

다. 검토의견

- 산업 환경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서비스업이 증가됨에 따라 고객 우선의 경영 환경에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과도한 언행, 성희롱, 갑질 등으로 인한 감정 노동 종사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감정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마련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금천구와 금천구 산하기관 등에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